

제6장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연쇄방식 도입방안 연구

최기재

제1절 개 요

한 나라의 경제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영위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 산업, 소비 산업, 투자 산업 및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산업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이 있다. 이와 관련한 통계로는 국민계정, 산업 동향 및 활동, 생산지수, 물가지수 등이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 중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첫째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둘째 1~2차 산업 못지않게 경기 동향에 민감하여 생산, 소비 및 고용 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활동별 국내 총 생산 및 지출 동향 자료의 하나이며, 셋째 신속성 있는 지표로서 매 익월 말에는 해당업종의 자료를 작성·공표·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경제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생산지수의 포인트별 분석유형으로 생산 동향, 수요 동향, 경기 동향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기적 월별 경제 동향을 파악하려는 분석이다. 기준년도의 월 평균생산(부가가치 액) 수준을 100.0으로 기준삼아 비교시점 생산수준을 지수화한다. 지수 수준을 봄으로써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 서비스업 생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업종별 지수는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 개별 업종 생산 동향, 업종 간 비교 및 하위 항목구성 지수 등을 재편성하여 특수 분류 사업 등의 생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총합지수 변동이 있었는지 업종별 지수 변화를 파악하여 업종별 기여도(생산변동 요인분석)를 분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요한 지표인 서비스업생산지수의 현행 작성방식이 5년 주기 대표업종과 가중치를 기준년도에 고정시킨 고정 가중산술평균법(라스파이레스 산식¹⁾)으로 대표업종 구조와 가중치(부가가치 액)가 안정적인 것이라는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제6장



러나 기준연도 가중치를 2~3년 지난 후 새로 공표를 시작해 5년 간 비교시점의 지수를 작성하는 동안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하위 구성항목의 업종들이 성장하거나 쇠퇴해 구조가 변함에 따라 현실과 차이가 나서 기준시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괴리가 발생하는 작성방법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정 가중산술평균법의 작성방식이 기준시점과 멀어질수록 새로운 서비스업 출현과 기존 서비스업 퇴장, 서비스 질 변화 등으로 기준년도와 동일한 세부 서비스 업종 포괄 범위와 가중치 값이 달라지고 비교성이 떨어져 국제연합 「1993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가중치 고정방식이 아닌 연쇄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연쇄 지수(Chained Index)는 직전시점 기준으로 매 기의 지수를 작성한 후(연환지수 : Linked Index) 최초 기준시점의 지수와 연승(連乘)하여 구하는 방식이다. 즉, 기준년도 가중치 고정방식은 중간시점의 가중치 구조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준시점(0시점)과 비교시점(t시점)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며, 연쇄지수 작성은 기준시점(0시점)과 비교시점(t시점) 사이 중간시점에서 변화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시점인 준거시점(Reference Period, Base Period)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연쇄지수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하위 구성지수의 가중치 변화를 추계하기 위해 지금의 5년 주기가 아닌 연간 또는 월간 자료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각각의 서비스 업종별 연간 조사결과를 해당 업종 포괄범위에 한해 적용하는 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를 해당 세부 업종별로 적용한 방법으로 준거시점을 연간주기로 하는 방안이며, 연간 관련 조사, 부가가치세 및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등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하위 구성지수의 가중치 변화를 매월 추계한다면 준거시점을 월간주기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 과제에서는 도·소매업 세부 가중치 변화와 관련 연간조사결과와 부가가치세 자료를 활용해 준거시점을 연간주기로 하는 방안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타 업종들에 대한 연쇄지수 적용여부와 월별 가중치 추계 등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끄집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연쇄방식 도입방안 연구’ 내용은 2절에서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방법, 3절에서는 연간조사 결과와 부가세 자료를 활용한 도·소매업 가중치 변화를 반영한 연쇄지수 작성 방안을 모색하고, 조사 자료와 부가세 자료를 적용한 결과도 비교·분석하고, 전반적인 향후과제들도 살펴보면서, 4절에서 맺음말로 마치고자 한다.

1) 라스파이레스 산식은 1864년 독일의 통계학자인 라스파이레스가 창안한 방식으로 가중평균법은 구성계열의 가중치가 다른 경우 $p_0q_{10}/\sum p_0q_{10}$ 를 고정가중치로 이용하여 $\sum [p_1q_1/p_0q_{10} \times p_0q_{10}]/\sum p_0q_{10}$ 를 구하는 산식을 말함

제2절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 현황

1. 연혁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지표와 국내 GDP 추계 기초 자료로 제공코자 서비스업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의 서비스업 생산 동향을 파악하여 매월 작성·공표하고 있다.

1998년에 1996년 기준 「서비스업 활동지수」 개발을 착수해 1999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시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2월부터는 본 조사 실시 및 지수시산을 거쳐 2000년 8월부터 공표하기 시작했다. 2000년 기준 지수개편 작업을, 2002년 8월에 기본계획을 세워 2004년 3월에 완료해 2000년 기준 지수를 공표하였으며, 2005년 기준 개편 작업을, 2007년 9월에 기본계획을 세워 2008년 3월에 완료해 2005년 기준 지수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업종은 세세 분류⇒세 분류⇒소 분류⇒중 분류⇒대 분류 체계로 분류해 적용하였으며, 1996년 기준지수는 한국산업분류 제6차 개정(1991. 9. 9.), 2000년 및 2005년 기준지수는 제8차 개정(2000. 1. 7.)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7. 12. 28.) 따라 2008년에 실시한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 2009년 3월부터 업종을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업생산지수의 포괄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변화 하지만, 세세/세/소 분류 등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부가가치를 생산한 업종은 월간동향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직 상위 분류 업종의 부가가치에 비례 배분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대분류 또는 중분류 및 소분류 등 세부업종 포괄범위가 한국산업분류 개정 때마다 바뀌고 있어 가중치(서비스업 구조) 변화가 생겨서 시계열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가법성(additivity)²⁾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지수작성 방식은 라스파이레스 산식을 적용한 기준년도 대표업종과 가중치를 고정해 산출하는 방식이지만 변화가 많은 서비스업 특성 때문에 기준년도 5년 주기 중간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하위 구성업종 포괄범위 변화와 새로운 업종 추가 및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현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수를 작성하는 과정을 처음 개발 시기, 5년 주기 기준년도 개편 및 산업분류 개정 등에 따른 업종 추가 및 변환으로 인한 가중치 변동시점에서 관련 업무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지수개발 및 개편작업은 방대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세부적인 수행방법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는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2) 가법성(additivity)은 기준 시점의 하위지수 구성항목의 합과 총합지수가 일치하는 것처럼 비교 시점의 하위지수 구성항목의 합과 총합지수가 일치해야 한다는 특성을 말함. 중간에 가중치가 바뀌면 가법성 결여 처리방법이 필요함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개발 및 개편 작성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준비 과정, 대표업종 및 표본업체 선정, 기준금액 및 지수계열 작성, 디플레이터 작성, 가중치 산정, 신·구 지수 병행 작성, 지수 공표 등 일련의 7개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준비과정에서는 서비스업 총 조사, 운수업통계조사, 한국은행,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협회 관련 기관 등 기초 자료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자료를 수집·활용해 1. 기본계획 수립, 2. 지수분류체계 설정·조정, 3. 지수 시계열 설정·정비, 4. 조사모집단 구성·정비, 관련 협회·기관 등 5. 참고자료 수집·분석한다. 두 번째 대표업종 및 표본사업체 선정에서는 「사업체 조사」를 모집단으로 삼아 「서비스업 총 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에서 선정기준을 설정해 신규, 탈락 등 조정하여 1. 업종 선정, 조사업체 표본 확인·보완 등 2. 표본 선정, 해당 사업체 보완을 통한 표본 보완용 명부 등 3. 표본명부작성, 병행 조사 및 경상조사 용도로 4.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 작성, 5. 자료처리 프로그램 개발이다. 세 번째 기준금액 및 지수계열 작성에서는 「서비스업 총 조사」에서 기준금액 기초 자료를 기준 삼아, 「서비스업동향조사」, 관련 협회·기관 자료를 참고자료로 타당성을 검토해 작성계열을 확정해 1. 기준금액 작성, 2. 지수계열 작성한다. 네 번째 디플레이터 작성에서는 세부업종별 재화·서비스를 고려해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업종별 1. 물가 적용기준 설정, 2. 이용자료 확정, 타당성 검토를 통한 3. 신·구 디플레이터를 비교한다. 다섯 번째 가중치 산정에서는 「서비스업 총 조사」매출액 자료를 기준 삼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관련 협회·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정비해 1. 부가가치 금액 집계, 업종별 세부 구성비 등 2. 가중치 산정, 관련 비교자료 검토·분석 등 3. 산정결과 비교·분석한다. 여섯 번째 신·구 지수 병행 작성에서는 신·구 업체 1. 병행조사 실시, 신·구 지수 비교분석 등 2. 지수 신규 편제 작성, 신·구 지수 접속을 위한 접속지수 산출 등 3. 신·구 지수 접속, 4. 지수 DB 구축, 5. 통계위원회 산정·토의를 한다. 일곱 번째 지수 공표에서는 관련 개발·개편 결과 보도자료 배포, 메타DB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 지수 공표와 관련 내용 수록한 2. 보고서 발간 등이다. 업종 포괄범위와 가중치 산정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기타 개발 및 개편 작성 업무의 세부 내용은 <부록>에서 다루고자 한다.

2. 업종 포괄범위와 가중치 변화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7. 12. 28. 확정·고시, 2008. 2. 1. 시행)에 따르고 있다. 이 제9차 개정은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ISIC Rev.4 Draft)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관련 산업의 구조 변화 및 통합화 경향에 따라 서비스업 부문에서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나로 묶어 별도 대분류(J)로 만들고 환경 산

업의 중요성 및 산업 활동의 결합성을 고려하여 하수·폐기물 처리와 제조업에 분류되었던 원료 재생업, 새롭게 대두된 토양정화 활동 등의 환경정화 및 복원업종을 하나로 통합해 별도 대분류(E)로 신설하였다. 또한 본사(本社) 기능이 주된 산업 분류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수의업이 보건업종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여행 사업이 운수업종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N)으로 바뀌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의 대분류 기준에 의하면 서비스업은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으로 16개 업종이다. 이 중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등 3개 업종은 현행 지수작성 포괄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13개 서비스업(대분류 기준)이 해당되며 세부 업종까지 살펴보면 포괄범위에서 제외하는 업종, 부가가치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해 조사하지 않고 직 상위 업종 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 배분하고 있는 업종, 매월 조사하고 있는 업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 대분류 기준에 따라서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세부적인 포괄범위, 부가가치로 산출한 가중치 산정 등 내용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도매 및 소매업(G)

도매 및 소매업(G)은 3개 중분류, 20개 소분류, 58개 세분류, 164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도·소매업 동향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 포괄범위와 가중치 현황 및 제약 상황 등의 설명을 이 절에서 하고 다음 절에서 연간 「도·소매업 조사」 최근 결과와 2008년도 부가가치세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간 가중치 변동을 반영하는 연환지수와 연쇄지수도입 방안을 따로 기술하기보다는 다음 절에서 도·소매업만을 대상으로 현황, 제약사항 및 연쇄(환)지수 도입방안을 실제 작성하는 등 핵심과제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나. 운수업(H)

운수업(H)은 4개 중분류, 11개 소분류, 20개 세분류, 46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발시점에는 6차 개정, 2000년 및 2005년 기준년도 개편에는 8차 개정 그리고 현재는 9차 개정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르고 있다. 관련 업종의 포괄범위 변



화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이 운수업(H)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으로 바뀌었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 운수업(H)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운수업	89.95	90.43	88.17	118.47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3.51	52.52	52.25	73.24
세세	철도운송업	2.83	2.85	1.63	5.23
소	육상여객운송업	24.63	24.78	32.90	42.62
세세	도시철도	2.87	2.89	1.68	2.06
세세	시내버스	6.37	6.41	7.50	9.07
세세	시외버스	1.88	1.89	3.21	4.82
세세	택시	13.51	13.59	20.51	26.67
세	화물자동차 운송업	24.48	24.62	17.99	25.39
소	소화물 전문 운송업	1.37	-	-	-
소	해상 운송업	12.39	12.46	13.27	14.02
세	외항 운송업	11.05	11.14	11.87	-
세	내항 운송업	1.34	1.32	1.40	-
세세	정기 항공 운송업	7.66	7.71	6.97	10.54
중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6.49	18.00	15.41	19.17
소	보관 및 창고업	1.47	1.48	1.92	3.19
소	기타 운송지원 서비스업	15.02	15.12	12.41	15.98
세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70	5.66	8.05	8.59
세세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3	5.33	7.52	6.79
세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2.71	2.76	1.94	2.50
세	화물 취급업	2.56	2.58	2.42	4.89
세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4.05	4.12	-	-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육상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장의차량, 기타 부정기 여객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파이프라인
수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화물, 항만 내 운송업, 기타
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다. 숙박 및 음식점업(I)

숙박 및 음식점업(I)은 2개 중분류, 4개 소분류, 8개 세분류, 24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업종 포괄범위는 이전에는 하나의 중분류에서 숙박업(55)과 음식점 및 주점업(56)으로 나뉘고, 소분류에서 음식점업(561)과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562)으로 나뉘면서 세분류와 세세분류 포괄범위가 일부 세분되거나 생겨서 출장 및 이동 음식점(5613), 치킨 전문점(56193), 비알콜 음료점업(5622) 등으로 바뀌었다. 제8차 개정의 다과점(5524, 제과점업 55241, 찻집 55242)은 기타 음식점업(5619, 제과점업 56191)과 비알콜 음료점업(5622)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2〉 숙박 및 음식점업(I)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숙박 및 음식점업	77.42	77.90	76.75	56.06
중	숙박업	10.59	10.66	11.64	14.21
세세	호텔업	4.86	4.89	6.91	8.48
세세	여관업	4.07	4.10	3.99	4.87
세세	휴양콘도 운영업	1.18	1.19	0.74	-
중	음식점 및 주점업	66.83	67.24	65.11	41.85
소	일반 음식점업	38.57	41.84	37.38	24.54
소	기타 음식점업	10.29	9.25	9.04	2.15
세세	제과점	1.10	1.11	-	-
세	주점업	12.54	12.62	13.64	9.27
세	비알콜 음료점	2.41	2.42	-	-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숙박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관구내 식당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이동 음식점

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은 6개 중분류, 11개 소분류, 25개 세분류, 42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업종은 제9차 개정에서 여러 산업을 하나로 통합한 산업으로 포괄범위는 제조업에서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통신업(J), 사업서비스



업에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서 영화산업(871), 방송업(872), 공연산업(873) 일부 업종, 뉴스제공업(881)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4.02			
중	출판업	18.89			
세	서적 출판업	3.13	-	-	-
세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3.01	-	-	-
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2.75	13.82	-	-
중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27	-	-	-
세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2.05	2.02	2.00	-
중	방송업	4.30	4.33	5.85	14.40
세세	지상파 방송업	1.9	1.91	4.04	-
세	유성, 위성 및 기타 방송업	2.40	2.42	1.81	-
중	통신업	48.47	50.15	57.97	50.51
소	우편업	6.29	7.71	4.84	3.93
소	전기통신업	42.18	42.44	53.13	46.58
세	유선통신업	19.85	19.98	29.86	-
세	무선통신업	17.78	17.89	19.59	-
세	기타 전기통신업	4.55	4.57	3.68	-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7.42	5.61	15.63	-
중	정보서비스업	2.69	3.57	2.56	-
소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인터넷 정보매개	1.54	0.87	0.91	-
소	기타 정보서비스업	1.15	2.70	1.65	-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통신업	위성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하위 세부분류인 세/세세분류 업종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소분류 이상의 구성(가중치) 자료만 있음
정보서비스업	

마. 금융 및 보험업(K)

금융 및 보험업(K)은 3개 중분류, 8개 소분류, 15개 세분류, 33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업종의 포괄범위 변동은 적은 편이며 세부분류 업종 간 이동한 업종들이 일부 있다. 투자기관,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이 세분류 단위에서 소분류 단위의 업종으로 옮겨졌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4〉 금융 및 보험업(K)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금융 및 보험업	152.64	153.58	175.98	202.08
중	금융업	98.82	100.67	87.17	95.96
세	일반은행	59.25	67.31	43.50	70.22
세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15.92	16.02	22.83	-
세	투자기관	4.45	4.48	5.41	5.69
세	여신 금융업	19.2	12.87	15.43	17.10
세세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15.87	11.53	15.43	-
중	보험 및 연금업	27.60	26.53	54.51	82.26
세	생명 보험업	13.06	12.10	25.15	39.61
세	손해 및 보증 보험업	7.61	7.45	14.44	20.40
세	연금 및 공제업	4.51	4.55	2.06	
중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6.22	26.37	34.30	23.86
소	금융지원 서비스업	23.95	24.09	30.17	13.60
소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2.27	2.28	4.13	10.26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금융업	중앙은행, 개발금융기관, 기타 여신 금융업, 기금 운영업, 금융 지주회사,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재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어음 교환업, 투자 자문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바. 부동산업 및 임대업(L)

부동산업 및 임대업(L)은 2개 중분류, 6개 소분류, 13개 세분류, 21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업종 포괄범위 변동은 적은 편이며 무형재산권 임대업이 소분류 단위에 새로 생겼으며,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이 세세분



류 단위에서 세분류 단위로 이동하였다. 세세분류 단위의 컨테이너 임대업은 기타 운송 장비 임대업에 통합되었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5〉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부동산업 및 임대업	62.60	62.98	53.81	87.81
중	부동산업	58.92	59.28	36.58	60.32
세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9.95	10.01	5.39	26.80
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8.11	18.22	5.02	-
세	부동산 관리업	20.38	20.51	18.28	26.70
세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10.48	10.55	6.99	6.82
중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8	3.70	18.13	27.49
소	운송장비 임대업	1.11	1.12	-	-
소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1.10	1.10	-	-
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1.47	1.47	18.13	-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무형재산권 임대업 하위 세부분류인 세/세세분류(10종) 업종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소분류 이상의 구성(가중치) 자료만 있음

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은 4개 중분류, 13개 소분류, 19개 세분류, 50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업종은 제9차 개정에서 사업서비스업(M)이 여러 산업으로 나뉘면서 중분류 단위의 연구 및 개발업(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 보건업(85) 중 수의업을 합쳐서 대분류 단위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으로 새로 만든 업종이다. 중분류 단위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의 여러 세부 업종들이 전문서비스업(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 등 3개 중분류 단위 업종으로 나뉘면서 중분류 단위 업종별 포괄범위의 변동이 커졌다.

2008년도부터 연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종의 기본 구조를 연간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는 세부 업종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편이고 한국은행 산업별 산출액 또는 경제 활

동별 국내총생산 등의 관련 자료도 세부업종(소분류 이하)까지는 공표하지 않고 있어 자료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 현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67	48.64	44.61	59.88
소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10.45	10.52	8.73	13.44
중	전문서비스업	18.26	19.04	18.34	12.31
소	법무 관련 서비스업	4.82	4.85	5.59	-
소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5.19	5.22	4.62	-
소	광고업	3.73	3.75	4.96	2.96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1.49	11.56	10.96	31.17
세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5.09	5.12	4.39	-
중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38	2.39	2.19	-
소	전문 디자인업	0.81	0.81	0.78	-
소	사진 촬영 및 처리업	1.57	1.58	1.41	-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연구개발업	경제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도제작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매니저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은 2개 중분류, 7개 소분류, 13개 세분류, 21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업종은 제9차 개정에서 사업서비스업(M)이 여러 산업으로 나뉘면서 중분류 단위의 사업지원 서비스업(75)과 운수업(I) 소분류 단위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633)이 합쳐서 대분류 단위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진 업종이다. 중분류 단위의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과 사업지원 서비스업(75)은 세부업종의 변동으로 포괄범위가 바뀌었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16	29.34	22.84	19.22
중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27	7.32	7.08	-
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3.01	3.03	1.71	-
소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4.26	4.29	5.37	-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	21.89	22.03	15.76	-
소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10.39	10.45	7.39	-
세	여행사업	1.39	1.40	1.08	1.50
소	경비, 경호 및 탐정 서비스업	5.88	5.92	6.18	-
소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4.23	4.26	1.11	-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사업 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교육서비스업(P)

교육서비스업(P)은 1개 중분류, 7개 소분류, 16개 세분류, 29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업종 포괄범위 변동은 작은 편이며 공교육과 사교육 산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초등 교육기관 중 세분류 단위 유아 교육기관(8511)과 별도로 초등학교(8512), 중·고등학교(852)를 하나로 묶고 대학교(85302) 등으로 나누고 일반교습 학원(855)과 기타 교육기관(856) 중에서 학원을 묶어 작성하고 있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8〉 교육서비스업(P)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교육서비스업	107.91	105.51	85.58	57.03
세	유아 교육기관	4.54	4.54	2.42	10.41
복합	초/중/고등학교	55.44	55.43	44.07	-
세세	대학교	23.05	23.05	18.86	-
복합	학원	20.32	20.46	17.90	46.62
소	기타 교육기관; 학원 제외	4.56	2.03	2.33	-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교육서비스업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은 2개 중분류, 6개 소분류, 9개 세분류, 21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업종 포괄범위 변동은 적은 편이며 보건업(86)의 병원, 의원, 공중보건 의료원, 기타 의료원이 세분류에서 소분류 단위로 이동하였으며 기타 보건업 중 조산원 세세분류 업종이 그 외 기타 보건업(86909)으로 합쳐지면서 줄었다. 사회복지사업(87)중 노인 수용 복지시설 세세분류 업종이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과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으로 세분되었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9.77	60.14	39.53	25.07
중	보건업	52.89	53.21	39.53	25.07
소	병원	26.87	27.03	-	-
소	의원	23.54	23.69	-	-
중	사회복지서비스업	6.88	6.93	-	-
소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07	2.08	-	-
소	비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4.81	4.85	-	-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보건업	공중 보건 의료원, 앰블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위 세부분류인 세/세세분류(9종) 업종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소분류 이상의 구성(가중치) 자료만 있음

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은 2개 중분류, 4개 소분류, 17개 세분류, 43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업종은 제9차 개정에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Q)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로 나



되면서 중분류 단위의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과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91)으로 구성되어진 업종이다. 소분류 단위로는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과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세분류의 업종이 다양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에 따라 세부분류가 변동됨에 따라 포괄범위가 크게 바뀌었고, 다양한 세부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만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6	31.36	26.35	13.27
중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22	3.28	2.42	1.05
소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0.76	0.80	0.56	0.67
소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46	2.48	1.86	0.38
중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25.54	28.08	23.93	12.22
소	스포츠 서비스업	10.31	12.75	12.74	7.12
세세	경주장 운영업	2.64	2.65	3.82	3.76
세세	골프장 운영업	3.76	3.78	3.02	0.79
세세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0.37	1.09	0.94	0.70
세세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3.54	3.40	4.80	1.87
소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15.23	15.33	11.19	5.10
세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35	1.36	0.80	-
세	오락장 운영업	6.77	6.81	4.81	5.10
세	갬블링 및 베팅업	7.11	7.16	5.58	-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기원 운영업,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타.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은 3개 중분류, 8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43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업종은 제9차 개정에서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이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과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으로 나뉘면서 중분류 단위의 협회 및 단체(94), 수리업(95)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6)으로 구성되어진 업종이다. 소분류 단위로는 산업 및 전문가단체, 노동조합, 기타 협회 및 단체,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1〉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63	39.87	22.68	20.56
중	협회 및 단체	8.78	8.84	9.06	-
세세	산업 단체	8.78	8.84	9.06	-
중	수리업	15.07	15.16	-	-
세세	자동차 종합 수리업	5.27	5.30	-	-
세세	자동차 전문 수리업	6.29	6.33	-	-
세세	가전제품 수리업	3.51	3.53	-	-
중	기타 개인서비스업	13.78	13.87	13.62	20.56
세	미용 및 미용업	6.65	5.64	6.56	10.71
세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2.48	2.12	2.49	4.36
세	세탁업	2.26	1.93	2.36	3.84
세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0.73	0.63	0.60	-
세세	예식장업	1.66	1.42	1.61	1.65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불교 단체, 기독교 단체, 천주교 단체, 민족종교 단체, 기타 종교단체, 정치 단체, 환경운동 단체, 타 시민운동 단체, 기타 협회 및 단체
수리업	건설/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기타 일반 기계장비 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파.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은 3개 중분류, 5개 소분류, 11개 세분류, 15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업종은 제9차 개정에서 제조업의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37)과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90)의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등이 합해 대분류 단위로 새롭게 구성되어진 업종이다. 새롭게 대두된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세부업종뿐 아니라 중분류 단위 업종의 가중치 자료도 없는 형편이다. 현재 세부 업종별 가중치 및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세부 가중치 및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경복원업	4.30	4.33	3.87	3.57
중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0.85	0.86	0.73	-
중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45	3.48	3.14	-
중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위 세부분류인 세/세세분류(4종) 업종에 대한 자료가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방사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전체(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제3절 연쇄방식 도입방안

1. 도입방안 개요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는 고정기준지수³⁾이므로 5년 주기 지수개편 기준시점으로 세부 업종, 가중치 값을 고정시켜 작성하기 때문에 기준연도에서 멀어질수록 실제 업종·가중치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실과 괴리가 커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

3) 고정기준지수(Fix-base index)란 시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두 기간 간의 가격 및 물량 변동 측정을 기준시점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지수를 말함

이에 이번 연쇄방식 도입방안은 도매 및 소매업(G)을 중심으로 업종·가중치 구조 변화를 연간단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2008년 기준 도·소매업조사 자료와 부가가치세 행정자료를 실제 적용코자 한다. 연간 조사와 5년 주기 총 조사 간의 서비스업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업 생산지수에는 곧바로 적용하기 힘들지만 가능한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현실반영을 제고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는 서비스업종별 연간 조사의 세부 업종구조를 활용하는 것이고 향후 5년 주기 총조사, 연간 업종조사 그리고 월간 동향조사 포괄범위를 가능한 표준화시켜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행정자료는 사업자등록 자료와 연간 부가가치세 납세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2008년도 자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힘들며 세부 업종분류가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세부업종 포괄범위에 따른 품질 좋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업분류가 우선되어야 하나 아직은 미비한 편이며, 향후 과세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세부업종별 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업분류 기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업종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포괄범위가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할 때마다 어느 정도 바뀌는 현실을 감안해 세부 업종별 포괄범위 및 업종 명칭 변경 변화를 한눈에 파악토록 할 수 있는 가칭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 연계표’와 ‘설명서’ 작성과 향후 개정할 때 용어·분류번호의 표준·명확화와 부여 체계화 등을 위하여 정비와 연구 과정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는 포괄범위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현행 업종의 포괄범위가 새로 생긴 건지, 다른 업종에서 옮긴 건지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이 커가고 있는지 사라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둘째는 업종의 명칭 변화를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명칭이 모호한 기타, 그 외, 분류 안 된 등의 현 업종 명칭을 관련 실증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화한다면 실제 조사 기획·현장·분석 및 행정자료 검토분석에서 세부적인 업종분류의 기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는 용어의 표준·명확화를 통하여 체계화 한다면 상품·서비스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컫는 용어라도 가능한 외래어보다는 표준어를 선택하고 여러 업종에 사용할 때는 표준화하여 가능한 향후에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 세부업종 포괄범위의 시계열 유지에 도움이 된다.

넷째는 업종의 세부분류에 대한 부여 기준을 체계화하면 세세분류와 세분류 간 변경을 줄여 분류체계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제껏 산업분류 개정 내용을 보면 세세분류, 세분류, 소분류 등의 세부분류 부여 기준이 모호하여 개정할 때마다 서로 간 넘나드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는데 개정으로 마치 세부분류 업종의 구조가 바뀐 것처럼 보이므로 향후에 이를 최소화하도록 부여 기준을 체계화함으로 업종별 세부 산업분류코드의 시계열 유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현실반영을 위해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연쇄지수⁴⁾ 도입방안 연구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연간 서비스업 개별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의 각 서비스업종 가중치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주기로 보완하는 방법이다. 전체 서비스업생산지수 포괄범위(대분류 13종)는 총조사와 연간조사 간 달라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 서비스업조사[폐기물·환경복원(E)/출판·영상·정보(J)/부동산·임대(L)/사업시설·사업지원(N)/교육서비스(P)/보건·사회복지(Q)/예술·스포츠·여가(R)/수리·개인서비스업(S), 합 8종] 등 대분류 12종은 세부 포괄범위가 다소 다르지만 시범 적용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 중 2008년 기준시점의 도매 및 소매업(G) 가중치를 적용코자 한다. 최근 연간 도·소매업조사 자료를 기초 자료로 기존 가중치(기존 부가가치율 적용) 산정방식과 신규 가중치(연간조사 자료 활용 부가가치율 적용) 산정방식을 적용한 신규지수 작성을 시산하고자 한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금액을 세부 업종별(산업 소분류까지) 기초 자료로 가중치를 구한 후 기존 지수를 이용하여 신규 지수 작성을 시산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연간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보다 비용 및 응답부담을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자료의 품질, 포괄범위 및 산업분류 적용 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이번 활용은 과세자료의 시범적인 적용 측면이 크다.

세 번째 방식으로는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기초 자료를 조사 자료든 행정 자료든 종합적으로 활용해 각 세부업종별 현실변화 구조에서 매월 추정한 가중치를 반영해 새로 기준시점 되는 준거시점을 월간 주기로 매기 지수를 작성하여 연환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처음 기준시점 지수와 연승하는 방식이다. 확실한 현실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뒷받침해 준다면 3가지 방식 중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장권장할 연쇄지수 작성 방식이지만 아직까지 월별 세부업종별 구조변화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할 기초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추정치에 대한 자료의 신뢰보다 고정시점에 대한 가법성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일련의 체계적인 연구를 거친 후에야 도입할 방식이라고 보고 이번 과제 대상범위에서는 제외시키고자 한다.

위의 3가지 연쇄방식 도입방식 중 이번 연구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G)을 중심으로 2008년 기준 연간조사 결과자료와 행정 과세자료의 가중치(부가가치) 변화를 적용하는

4) 연쇄지수(Chain index)란 시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두 기간간의 가격 및 물량 변동 측정을 단기 변동의 누적으로, 즉 연속적 기간간의 지수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지수

방식을 모색하였으며, 총론적으로는 서비스업종(대분류 기준) 국내총생산(GDP)과 생산지수의 가중치 구성비율, 조사로 인한 제약 및 개선할 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간조사 결과 가중치 변화 적용 방안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는 5년 주기 『서비스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업종 및 가중치를 고정시켜 산출하기 때문에 기준시점의 기초 자료의 가중치가 일반적인 산업구조 변화 흐름이 아닌 당해연도 특성을 가미하고 있다면 이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는 기간이 지날수록 커지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고정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세부업종 및 가중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5년 주기 『서비스업 총조사』를 기본 산업구조로 하고 각 업종별 연간 조사 결과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세부업종 변화와 그 세부업종별 가중치 변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가. 가중치 비교·추이와 업종별 연간조사

현행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21종, 중분류 76종, 소분류 228종, 세분류 487종, 세세분류 1145종이며, 이 중 통상적인 서비스업의 포괄범위는 대분류 16종, 중분류 41종, 소분류 119종, 세분류 254종, 세세분류 582종이다.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의 포괄범위는 행정, 국방, 사회보장(O), 가사서비스(S) 및 국제 및 외국기관(U) 등 대분류 3개 업종을 제외한 대분류 13종, 중분류 37종, 소분류 110종, 세분류 242종, 세세분류 552종이지만 지수는 대분류 13종, 중분류 36종, 소분류 87종, 세분류 140종, 세세분류 및 기타 70종 등을 작성하고 있다. 포괄범위가 넓은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에 비해 지수작성종류가 적은 이유는 가중치 비중이 낮은 업종은 월간 조사 포괄범위에 기준시점부터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년도로 하여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해 소분류 단위까지 1996년도, 2000년도 및 2005년 가중치 변화를 살펴보고, 대분류 단위로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과 산업연관표 산업별 국내 산출액 구성비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업종별 가중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포괄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6차 개정(1991. 9. 9.) 및 8차 개정(2000. 1. 7.) 적용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중분류 업종단위 이상의 가중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13〉 업종별 가중치 변화

업종	2005	2000	1996
G 도매 및 소매업	219.60	276.02	263.26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9.07	28.24	35.07
51 도매업	107.45	136.48	115.47
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93.08	111.30	112.72
H 55 숙박 및 음식점업	77.90	76.75	56.06
I 운수업	90.43	88.17	118.47
60 육상 운송업	52.25	52.52	73.24
61 수상 운송업	12.46	13.27	14.02
62 항공 운송업	7.71	6.97	10.54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8.00	15.41	20.67
J 통신업	50.15	57.15	50.51
K 금융 및 보험업	153.58	175.98	202.08
65 금융업	100.67	87.17	95.96
66 보험 및 연금업	26.53	54.51	82.26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6.37	34.30	23.86
L 부동산 및 임대업	62.98	53.81	87.81
70 부동산업	59.28	35.68	60.32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70	18.13	27.49
M 사업서비스업	99.58	84.56	86.37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23.00	18.19	8.77
73 연구 및 개발 업	10.52	8.73	13.44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12	35.88	46.44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27.94	21.76	17.72
O 80 교육서비스업	105.51	85.58	57.03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0.14	39.53	25.07
85 보건업	53.21	39.53	25.07
86 사회복지사업	6.93	-	-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7.93	35.08	29.21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7.37	9.29	16.27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0.56	25.79	12.94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2.20	26.55	24.13
90 하수/폐기물 처리, 청소 관련 서비스업	4.33	3.87	3.57
91 회원단체	8.84	9.06	-
92 수리업	15.16	-	-
93 기타 개인서비스업	13.87	13.62	20.56

위 표의 기울기 글자로 표시한 업종은 2005년 가중치가 과거연도 비율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자료이다. 이 업종들의 가중치 변동이 심한 이유는 관련업종 포괄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사 당해연도에 특수한 결과를 반영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통계들과 비교·검증하여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대분류 단위 위주의 서비스업종별 연간 국내총생산 구성 추이를 살펴보고, 서비스업생산지수 기준연도와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총생산 서비스업종별 구성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4〉 국내총생산(GDP) 업종별 구성 추이

업종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G 도매 및 소매업	182.05	186.64	156.84	156.39	154.57	155.78	159.22
I 운수업	88.73	87.28	86.23	83.95	85.38	83.20	81.51
H 숙박 및 음식점업	53.91	53.46	44.49	43.77	40.55	37.79	37.08
J 통신업	39.93	44.30	46.49	43.77	40.55	37.79	37.08
K 금융 및 보험업	126.55	111.94	130.45	127.30	130.22	130.23	128.20
L 부동산 및 임대업	177.54	177.43	154.45	151.04	147.95	143.73	143.79
M 사업서비스업	85.58	84.48	92.58	95.17	96.00	99.78	96.12
O 교육서비스업	102.50	98.94	113.61	117.62	118.37	121.84	122.68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4.35	53.16	69.77	72.87	75.54	76.88	83.32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57.42	62.96	66.79	68.76	68.99	67.61	66.08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41.44	39.40	38.14	38.28	37.96	38.16	37.47
서비스업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위 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하는 업종은 구성비가 증가 추세이며, 기울기 글씨는 하락 추세이다. 또한, 서비스업생산지수 업종별 가중치와 동일한 업종의 국내총생산 구성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15〉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국내총생산(GDP) 업종별 구성비 비교

업종	1996		2000		2005	
	지수	GDP	지수	GDP	지수	GDP
G 도매 및 소매업	263.26	182.05	276.02	186.64	219.60	156.84
H 숙박 및 음식점업	56.06	53.91	76.75	53.46	77.90	44.65
I 운수업	118.47	88.73	88.17	87.28	90.43	86.23
J 통신업	50.51	39.93	57.15	44.30	50.15	46.49
K 금융 및 보험업	202.08	126.55	175.98	111.94	153.58	130.45
L 부동산 및 임대업	87.81	177.54	53.81	177.43	62.98	154.45
M 사업서비스업	86.37	85.58	84.56	84.48	99.58	92.58
O 교육서비스업	57.03	102.50	85.58	98.94	105.51	113.61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07	44.35	39.53	53.16	60.14	69.77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9.21	57.42	35.08	62.96	37.93	66.79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24.13	41.44	26.55	39.40	42.20	38.14
서비스업 총계	1000.00		1000.00		1000.00	



위 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하는 업종은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업종별 가중치가 국내 총생산 관련업종 구성비보다 높은 자료이며, 기울기 글씨는 낮은 자료이다. 이 표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각각의 업종에 대한 조사상의 결과로 보인다. 연장으로 개별 조사하는 업종은 보다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었으며, 여러 서비스업을 묶어서 연간 조사하는 업종은 낮은 가중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업 및 임대업(L)의 경우 국내총생산 구성비와 비교해 절반보다 낮은 업종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조사로만 관련 산업의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오는 태생적 제약사항으로 사업장 없이 사업한 경향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모집단 포괄범위를 넓혀야 한다.

5년 주기 『서비스업총조사』의 결과로 기본 구조(세부업종, 가중치)를 짜고 도매 및 소매업(G)은 연간 『도·소매업조사』, 운수업(H)은 연간 『운수업 조사』, 숙박 및 음식점업(I)은 연간 『숙박 및 음식점업 조사』, 폐기물·환경복원(E), 출판·영상·정보(J), 부동산·임대(L), 사업시설·사업지원(N), 교육서비스(P), 보건·사회복지(Q), 예술·스포츠·여가(R), 수리·개인서비스업(S) 등 8종의 서비스업은 연간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은 연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포괄범위가 일부 다르기도 하지만 대분류 12종을 적용해 보완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에서 대분류 단위로 새로 생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과 폐기물·환경복원(E)은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결과와 달라진 포괄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9차 개정 이후 실시하고 있는 관련 연간조사를 근간으로 대분류 단위에 맞게 추가되어야 한다.

나. 2008년 기준 『도·소매업조사』 결과활용 연쇄지수 시산

도매 및 소매업(G)은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세부업종이 가장 많고 가중치도 가장 크며, 관련 『도·소매업조사』도 매년 실시하여 세세분류 업종까지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월간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서비스업동향조사』의 표본사업체 수가 전체 9,148 개 중 도·소매업이 4,031개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5년 주기, 연간 및 월간의 조사 업종 포괄범위가 가장 유사하고 업종별 자료 품질도 양호한 도매 및 소매업(G) 부문만을 대상으로 연간조사의 매출액,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시산해보고자 한다.

우선 도·소매업(소분류 단위 이상)의 서비스업생산지수에서 가중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16〉 소분류 이상 도매 및 소매업(G)의 가중치 변화

종류	업종 이름	2010	2005	2000	1996
대	도매 및 소매업	218.25	219.60	276.02	263.26
중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0.75	19.07	28.24	35.07
소	자동차 판매업	6.47	6.51	11.16	15.00
소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28	4.31	5.62	8.05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06.8	107.45	136.48	115.47
소	산업용 농축산물 및 생물 도매업	2.11	2.13	2.58	-
소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21.97	22.12	32.76	-
소	가정용품 도매업	26.74	29.73	32.31	32.92
소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25.58	22.99	31.17	20.37
소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8.73	8.80	9.81	-
소	기타 전문 도매업	21.67	21.84	27.85	-
중	소매업; 자동차 제외	100.70	93.08	111.30	112.72
소	종합 소매업	36.83	37.06	34.33	15.81
소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7.42	7.46	11.52	23.00
소	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6.88	-	-	-
소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2.87	12.95	16.27	-
소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67	-	-	-
소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64	-	-	-
소	연료 소매업	9.31	8.25	11.46	-
소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0.90	12.77	20.04	-
소	무점포 소매업	7.18	7.23	8.91	-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 개정을 적용한 1996년과 8차 개정을 적용한 2000년, 2005년 그리고 현행 업종의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달리 포괄범위를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략적인 추이로도 보기 위해 비교해 보았다.

포괄범위에서 제외된 세세분류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업종(중분류)	제외 세세분류 업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중개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기계장비 중개업, 상품종합 중개업, 기타 상품 중개업, 가방, 여행용품 도매업, 시계, 귀금속 제품 도매업, 사진기, 광학기기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염료, 안료 도매업, 비료, 농약 도매업, 합성고무, 합성수지 도매업, 기타 화학물질 도매업, 방직 섬유, 실 도매업, 직물 도매업,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종합 소매업, 음료 소매업, 담배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기타 중고품 소매업



2008년 기준 『도·소매업 조사』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한 도매 및 소매업(G) 세 부업종(세세분류 까지) 구성비는 <부록> 편에 수록하였으며, 2008년 연간조사를 현행 방식으로 산출한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7> 2008년 연간조사와 현 부가가치 산출적용 가중치

분류	업종 이름	2008	현행
대	도매 및 소매업	1000.00	1000.00
중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5.80	49.26
소	자동차 판매업	37.02	29.64
소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7.97	19.61
소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0.81	0.00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	612.13	489.35
소	상품 중개업	16.75	0.00
소	산업용 농축산물 및 생물 도매업	8.18	9.67
소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04.60	100.66
소	가정용품 도매업	102.60	122.52
소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133.78	117.21
소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41.35	40.00
소	기타 전문 도매업	163.42	99.29
소	상품 종합 도매업	41.13	0.00
중	소매업; 자동차 제외	332.08	461.40
소	종합 소매업	117.15	168.75
세	대형 종합 소매업	70.18	107.49
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5.80	61.26
소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7.10	34.00
소	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25.85	31.52
소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33.55	58.97
소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1.51	25.98
소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9.79	16.68
소	연료 소매업	66.54	42.66
소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7.93	49.94
소	무점포 소매업	22.66	32.90

위 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하는 업종은 2008년 기준 『도·소매업 조사』 결과 구성비가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가중치 구성비보다 낮은 자료이며, 기울기 글씨는 높은 자료이다. 위와 같은 차이는 조사 기준년도가 2005년과 2008년, 조사주기 5년과 1년, 조사업종 포괄범위 등에 의한 요인으로 보인다. 현행 소분류 단위 업종에서 가중치가 없는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상품중개업, 상품 종합 도매업 3개 업종은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과 가정용품 도매업 가중치에 포함시켜 시산하고자 한다.

2008년 기준 『도·소매업 조사』 결과를 활용한 위 표의 가중치를 2008년 준거시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18〉 2008년 연간조사와 현 부가가치 산출적용 신규 지수

분류코드	2009. 1월		2009. 2월		2009. 3월		2009. 4월		2009. 5월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G	114.6	111.9	107.7	107.0	118.8	117.9	118.9	118.1	120.5	118.9
45	102.7	99.4	109.7	107.8	119.9	118.5	124.9	123.5	145.3	145.6
46	111.1	110.4	107.2	107.0	118.9	118.4	119.0	118.3	115.4	114.7
47	119.5	116.8	108.0	106.8	118.6	116.9	118.2	116.7	123.2	122.1
471	134.4	132.7	108.5	107.3	122.2	120.8	121.1	119.9	129.7	128.2
분류코드	2009. 6월		2009. 7월		2009. 8월		2009. 9월		2009. 10월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G	121.7	122.1	120.0	120.3	117.7	118.2	127.7	127.4	125.7	125.5
45	163.1	164.8	141.2	140.5	123.2	121.0	156.8	157.8	154.8	155.0
46	122.5	121.6	121.3	120.4	119.6	119.2	127.4	126.9	121.9	122.3
47	116.4	115.8	116.4	116.6	115.1	116.0	124.8	123.1	126.7	126.3
471	121.0	120.1	123.2	122.3	123.3	122.5	133.7	132.4	135.0	133.5
분류코드	2009. 11월		2009. 12월		2010. 1월		2010. 2월		2010. 3월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G	124.3	123.4	133.0	133.8	123.5	123.5	120.5	119.7	130.8	131.9
45	158.3	158.7	171.1	173.1	149.6	149.0	136.5	136.1	151.4	151.3
46	119.7	119.9	132.0	132.2	121.9	122.2	117.1	117.3	132.2	133.0
47	125.6	123.9	130.0	130.2	122.5	121.6	122.4	121.5	127.1	126.7
471	130.2	128.4	138.4	136.3	132.7	130.9	134.5	132.8	130.4	128.8

현재 공표하고 있는 지수 중 가장 하위구성항목인 대형 종합소매업(4711), 음·식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 세분류(2종)와 이를 제외한 모든 소분류(16종) 단위는 가중치가 바뀌더라도 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현행과 같은 지수를 유지하며, 상위구성항목에 영향을 미친다.

위 표에서 보듯이 4711, 4712 세분류 단위 가중치 변동에 따라 종합소매업(471)이, 451, 452 소분류 단위 가중치 변동으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이, 462~467 소분류 단위 가중치 변동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 새로운 가중치를 반영한 471과 472~479 소분류 단위 가중치 변동으로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그리고 새로운 가중치를 반영한 45, 46, 47를 토대로 도매 및 소매업(G) 2008년 기준 가중치 적용 신규 지수를 시산하였다. 산업연관표의 도·소매업 부가가치율은 0.603으로 연간 『도·소매업 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세부업종들을 통합해 부문분류(Commodity Classification)표 체계에 맞춰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 분류는 산업연관 파악을 위한 품목 및 서비스 세부유형으로 대/중/소/기본 4단위 체계로 대/중/소/세/세세 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분류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산업연관표 상의 도·소매업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2008년 기준 『도·소매업 조사』 매출액 및 매출원가 자료로 부가가치를 산출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19〉 2008년 연간조사로부터 부가가치 산출적용 가중치

분류	업종 이름	2008	현행
대	도매 및 소매업	1000.00	1000.00
중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0.72	49.26
소	자동차 판매업	43.24	29.64
소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6.60	19.61
소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0.87	0.00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8.22	489.35
소	상품 중개업	20.90	0.00
소	산업용 농축산물 및 생물 도매업	7.86	9.67
소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99.44	100.66
소	가정용품 도매업	122.67	122.52
소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120.80	117.21
소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36.77	40.00
소	기타 전문 도매업	102.00	99.29
소	상품 종합 도매업	17.78	0.00
중	소매업; 자동차 제외	411.06	461.40
소	종합 소매업	158.94	168.75
세	대형 종합 소매업	102.62	107.49
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4.38	61.26
소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24.28	34.00
소	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28.58	31.52
소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4.74	58.97
소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7.95	25.98
소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3.52	16.68
소	연료 소매업	30.89	42.66
소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0.80	49.94
소	무점포 소매업	41.35	32.90

2008년 연간조사를 활용하여 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가중치보다 연간조사로부터 직접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 현 서비스업생산지수의 부가가치 구성비와 유사하게 산출되었다.

산업 소분류 단위인 상품 중개업(461), 상품 종합 도매업(468)의 가중치가 20.90, 17.78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 또는 향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008년 연간조사로부터 부가가치를 산출하여 가중치 구성비를 적용한 신규 지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20〉 2008년 연간조사로부터 부가가치 산출적용 신규 지수

분류코드	2009. 1월		2009. 2월		2009. 3월		2009. 4월		2009. 5월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G	114.6	114.0	107.7	107.5	118.8	118.9	118.9	119.0	120.5	118.7
45	102.7	96.3	109.7	106.0	119.9	117.1	124.9	122.1	145.3	145.8
46	111.1	110.0	107.2	107.2	118.9	119.0	119.0	118.9	115.4	115.4
47	119.5	120.4	108.0	108.3	118.6	119.1	118.2	118.8	123.2	123.8
471	134.4	134.5	108.5	108.4	122.2	122.0	121.1	121.1	129.7	129.5
분류코드	2009. 6월		2009. 7월		2009. 8월		2009. 9월		2009. 10월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G	121.7	122.5	120.0	120.7	117.7	118.5	127.7	127.9	125.7	124.4
45	163.1	166.5	141.2	139.9	123.2	118.9	156.8	158.7	154.8	155.1
46	122.5	122.4	121.3	121.2	119.6	119.6	127.4	127.3	121.9	121.9
47	116.4	117.3	116.4	117.2	115.1	115.6	124.8	125.7	126.7	127.2
471	121.0	121.3	123.2	123.5	123.3	123.7	133.7	133.7	135.0	134.9
분류코드	2009. 11월		2009. 12월		2010. 1월		2010. 2월		2010. 3월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G	124.3	122.8	133.0	133.2	123.5	123.3	120.5	119.4	130.8	131.8
45	158.3	158.9	171.1	175.0	149.6	148.4	136.5	135.7	151.4	151.3
46	119.7	119.7	132.0	132.2	121.9	122.0	117.1	117.2	132.2	132.4
47	125.6	126.4	130.0	130.6	122.5	123.5	122.4	123.3	127.1	127.8
471	130.2	129.7	138.4	137.7	132.7	132.2	134.5	134.2	130.4	130.1

3. 연간 과세자료 가중치 변화 적용 방안

국세청 과세자료인 2008년 부가가치세 납부를 바탕으로 한 도매 및 소매업(G) 세부업종(세분류까지) 구성비는 <부록> 편에 수록하였으며, 과세자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V.A.T. 10%를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율이 세부업종마다 다른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가가치세 자료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식이 현실과 괴리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지만, 세부업종별 모집단 보완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조사비용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다양하게 개별 사업자등록 자료를 분석하여 세부업종별 기본정보와 변동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현행 고정방식보다 연쇄방식을 도입한다면 서비스업 연간조사 자료와 과세 자료를 종합하여 세부업종 포괄범위와 구조변화 등을 파악해 현실과의 괴리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에 2008년 과세자료인 부가가치세를 활용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21〉 2008년 과세자료 부가가치세 산출적용 가중치

분류	업종 이름	2008	현행
대	도매 및 소매업	1000.00	1000.00
중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3.04	49.26
소	자동차 판매업	16.94	29.64
소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5.37	19.61
소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0.73	0.00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	697.07	489.35
소	상품 중개업	49.81	0.00
소	산업용 농축산물 및 생물 도매업	9.77	9.67
소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88.04	100.66
소	가정용품 도매업	104.75	122.52
소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131.20	117.21
소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42.07	40.00
소	기타 전문 도매업	215.38	99.29
소	상품 종합 도매업	56.03	0.00
중	소매업; 자동차 제외	269.89	461.40
소	종합 소매업	82.74	168.75
세	대형 종합 소매업	50.13	107.49
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30.68	61.26
소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4.11	34.00
소	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23.34	31.52
소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4.12	58.97
소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0.92	25.98
소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7.24	16.68
소	연료 소매업	70.89	42.66
소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3.48	49.94
소	무점포 소매업	23.05	32.90

위 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하는 업종은 2008년 부가가치세 자료 구성비가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가중치 구성비보다 낮은 자료이며, 기울기 글씨는 높은 자료이다. 위와 같은 차이는 2005년과 2008년으로 기준 년도가 다르고, 통계조사와 행정자료의 세부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 서비스업생산지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소분류 단위 상품중개업과 상품 종합 도매업의 비율이 천분비로 각각 49.8, 56.0으로 전체 도·소매업 비중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전문 도매업 비중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과세자료가중치를 적용하여 2008년 준거시점의 신규 지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22〉 2008년 부가가치세 산출적용 신규 지수

분류코드	2009. 1월		2009. 2월		2009. 3월		2009. 4월		2009. 5월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G	114.6	110.0	107.7	106.4	118.8	117.0	118.9	117.3	120.5	116.8
45	102.7	107.4	109.7	112.4	119.9	122.0	124.9	127.0	145.3	145.0
46	111.1	108.3	107.2	106.1	118.9	117.3	119.0	117.5	115.4	113.7
47	119.5	114.8	108.0	106.3	118.6	115.7	118.2	115.6	123.2	121.3
471	134.4	134.0	108.5	108.4	122.2	122.0	121.1	121.1	129.7	129.5
분류코드	2009. 6월		2009. 7월		2009. 8월		2009. 9월		2009. 10월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G	121.7	120.3	120.0	119.1	117.7	118.5	127.7	125.4	125.7	124.0
45	163.1	160.6	141.2	142.1	123.2	126.3	156.8	155.4	154.8	154.6
46	122.5	120.6	121.3	119.3	119.6	119.2	127.4	125.9	121.9	122.1
47	116.4	114.6	116.4	115.7	115.1	115.7	124.8	120.2	126.7	125.1
471	121.0	121.3	123.2	123.5	123.3	123.7	133.7	133.7	135.0	134.9
분류코드	2009. 11월		2009. 12월		2010. 1월		2010. 2월		2010. 3월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현행	신규
G	124.3	121.7	133.0	133.0	123.5	122.6	120.5	118.8	130.8	132.2
45	158.3	157.9	171.1	168.3	149.6	150.4	136.5	137.1	151.4	151.4
46	119.7	120.0	132.0	132.9	121.9	122.7	117.1	117.6	132.2	134.1
47	125.6	121.6	130.0	128.7	122.5	119.0	122.4	119.5	127.1	125.1
471	130.2	129.7	138.4	137.7	132.7	132.2	134.5	134.2	130.4	130.1

4. 각 방식별 제약 및 개선할 사항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는 5년 주기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를 골격으로 분류체계, 시계열 및 모집단 준비를 한 후, 대표업종과 표본사업체를 선정하고 매월 『서비스업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 작성방식의 근본적인 제약사항은 기준시점의 분류체계와 하위 구성항목의 가중치인 세부업종의 매출액(부가가치 금액)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지수 작성시점과 기준시점 간의 업종 분류체계 포괄범위와 가중치가 많이 바뀌더라도 기준시점의 골격을 고정하여 산출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작성시점의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기본 골격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서비스업 동향조사』의 모집단, 대표업종, 표본사업체 등에도 영향을 끼쳐 파생되는 후속조치 작업과 일련의 준비작업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류체계와 가중치 변화를 반영하는 연쇄지수 방식 도입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부항목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를 통계청 연간조사인 『도·소매업 조사』, 『숙박 및 음식점 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 『운수업 조사』 및 『서비

스업(폐기물·환경복원, 출판·영상·정보,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사업지원,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수리·개인서비스업 등 8종) 조사』 결과를 적용하는 방안은 서비스업생산지수 포괄범위와 거의 일치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K) 및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의 통신업, 교육서비스업(O)의 공교육서비스 및 일부 세부업종 등을 조사 포괄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이 방식의 기본은 통계청 연간조사 결과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조사 제외한 업종은 별도의 조사 및 행정자료를 활용해 연간 준거시점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업연관표 분류체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현행 가중치 산출방식은 세부업종별 가중치 자료가 미비해 하위구성항목 가중치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방식으로는 연간조사의 세부업종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방식은 모든 업종에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업종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와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조사 자료와 함께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기본 틀인 포괄범위와 가중치 구조파악 등에 유익한 정보 제공 기반이 되리라고 본다. 과세자료의 제약사항은 자료 품질도 검증해야 하겠지만, 산업분류가 2008년도에 새롭게(9차) 개정되어 실 기업분류는 거의 이전 분류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쇄방식 도입을 위해서는 세부업종별 정확한 실적 자료와 구조자료가 요구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련 통계생산시스템이 실제로 급변하는 서비스 산업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기에, 관련 업종 연간조사와 과세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작성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현실반영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연쇄방식 도입을 위한 기반이 되리라고 본다.

5. 도·소매업 가중치 연간변동 적용과 시사점

현 서비스업생산지수의 도·소매업 가중치는 기준년도의 5년 주기 총조사를 토대로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표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이는 이 지수의 하위구성항목인 서비스업 분류체계와 산업연관표 부문분류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하위구성항목일수록 부가가치율이 실 세부업종과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많으며, 세부적으로 유용한 여러 정보를 간과할 여지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본 연간 자료로 서비스업의 최근 구조변화를 어떻게 찾아 지수 하위구성항목과 중요도변동을 적용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코자 한다.

현 지수에는 도매업(46) 중 상품 중개업(461), 상품 종합 도매업(468)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들 업종이 신 성장업종인지도 알 수 없지만 연간조사에는 도·소매업 매출액 구성비 중에서 1.7%, 4.1%, 과세자료에는 5.0%, 5.6%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도 6,503곳과 1,274곳 및 사업자 수도 54,497개와 4,360개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4> 도매 및 소매업(G) 2008년 과세자료 및 연간조사 자료 비교에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현 지수 하위구성항목에 제외된 업종을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하위구성항목에 대한 매월 동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지수의 신규 하위구성항목에 추가하는 연쇄방식 도입방안의 하나의 길이 열린다. 서비스업 구조변화는 대분류에서 거시(탑다운 방식)적인 자료체계보다는 세세분류로부터 미시(버텀업 방식)적인 자료체계가 유용하다. 대부분 신 성장업종은 산업분류 중 세세분류의 기타업종에서 독립적인 세세분류로 그리고 세분류, 소분류 등으로 성장단계를 밟는다. 그러므로 지수로 작성하느냐와 별도로 지수의 하위구성항목 체계와 가중치를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적용하여야 연쇄방식을 도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도·소매업 연간조사를 활용한 가중치 변동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첫 번째 방식으로 현행 방식인 산업연관표 부문분류 중 도소매 부문전체를 하나의 부가가치율(0.603)로 산출하는 것은 매출액 구성비로 산출하는 것과 같다. 즉, 도·소매업(G) 모든 세세분류부터 대분류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세부적인 업종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연간조사의 세부업종별 매출액, 매출원가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율을 산출하여 산업연관표 부문분류 체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대신 산업분류 체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자료는 <부록 3> 도매 및 소매업(G) 2008년 세부업종별 부가가치와 가중치에 수록하였다.

세 번째 방식은 부가가치세 자료의 과세표준합계금액 구성비를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도 첫 번째 방식처럼 부가가치세가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매출액 대비 10%로 동일하기 때문에 매출액 구성비와 똑같지만 매년 부가가치세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업종 전체 사업자를 포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 고정방식 지수작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위구성항목 추가·퇴출이 가능토록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간자료의 세세 분류 업종 구조변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항목의 중요도 변동은 연간조사의 매출액, 매출원가를 이용해 세부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직접 산출하는 방식이다. 과세자료는 신규 항목 추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부가가치율은 두 번째 방식으로 통계청에서 직접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 방식인 산업연관표 부문분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한계점은 연쇄지수를 연간조사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시산해보면 명확히 보여준다. 도·소매업(G)은 대(1)-중(3)-소(20)-



세(58)-세세(164) 분류단계로 되어 있어 이 분류체계로 가중치가 모두 있다면 맨 하위 구성항목(세세) 가중치 변동에 따라 상위항목(세, 소, 중, 대, 서비스업 전체)으로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행 대(1)-중(3)-소(17)-세(2) 체계의 가중치는 연간조사 가중치 변동자료가 정확하게 산업분류체계를 따라 산출될 수 있더라도 맨 하위구성항목은 세분류(4711, 4712)부터 가중치 변동이 있고 소분류(471)에 영향을 주며, 대부분 소분류(451~2, 462~7, 472~9)는 가중치 변동만 있고 지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중분류(45~7), 대분류(G) 및 서비스업 총 지수 등에만 영향을 미친다. 만약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세세분류 가중치가 있다면 세, 소, 중, 대, 서비스업 총 지수 등 5단계 상위단계에 영향을 준다.

제4절 맺음말

우리나라 사회·경제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통계조사로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새로운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도래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교육·자본·참살이(Wellbeing) 열풍으로 인하여 서비스업은 제대로 개념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 이를 기존 통계 생산방식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통계청은 다양한 산업의 생산 활동을 월간 동향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는 생산지수를 기준시점 고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작성 직전시점으로 하는 연환·연쇄 방식을 도입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초자료 미비 등 여러 제약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쇄방식은 서비스업 구조가 급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입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연쇄방식의 기초 자료와 전문 인력 보강 등 통계 기반을 쌓기 위해 많은 통계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나 열악한 조사환경 및 통계생산 여건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꼼꼼하고 차분하게 기반을 조성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쇄방식은 UN 국민계정시스템(93SNA)에서도 구조변화가 심한 부문에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작성되고 있지만, 하위구성항목들이 자유롭게 추가·퇴출하는 연쇄방식보다는 항목의 중요도(가중치)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이며 항목 변동은 기초 자료가 부족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괄범위가 광범위하고 매월 「서비스업 동향조사」, 행정자료 또는 타 기관 월간 자료 수집은 물론 지수작성·공표 등 경산업무와 모집단 정비, 조사업종 추가, 디플레이터 작성 및 가중치 산정 등을 위하여 서비

산업총조사, 운수업조사,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조사 제외업종 관련 행정자료 및 연간조사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추계한 통계이기 때문에 개선여지도 관련부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가중치 구조변화를 알 수 있는 관련 기초 자료를 얼마나 잘 생산 하느냐에 달려 있어 담당부서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연쇄방식 도입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구성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에 가능한 하위구성항목은 현재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야 하며 가장 하위항목부터 명확히 체계화(버텀업 방식)해야만 연쇄방식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본 과제를 하면서 서비스업 산업분류 연계 및 관련된 포괄범위와 가중치 추세 검토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업분류 체계도 중요하지만 산업현장과 조사환경을 감안해 산업통계의 근간인 산업분류의 포괄범위와 명칭 등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 통계생산부서와 분류기준부서가 서로 협조하여 보완해야 하며, 지금까지 산업분류가 개정되면서 변화된 분류를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산업분류연계표를 만들었으면 한다.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과거 산업분류를 적용한 사업자등록 자료를 현 분류체계에 따라 정확히 부여하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각 업종 연간조사는 지수작성 기본 통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기획부터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보완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기관의 기초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활용 자료가 지수작성에 도움 주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달리 가고 있다면 장기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통계개발원에서 개선·개발 연구 등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연쇄방식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특성이 다른 여러 업종들이 하나의 대분류로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중분류 단위로 매월 실적자료와 지수관련 안팎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IT), 콘텐츠, 문화, 예술, 운동 및 연쇄·복합 업체 등 신 성장산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연쇄방식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 수요 부응과 보다 질 높은 지수를 생산코자 한다면 인력 충원 등 여건 기반을 위해 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추진하면서 도입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통계청(2001), 「서비스업 활동지수」 개발보고서
통계청(2004), 「2000년 기준 서비스업활동지수」 개편보고서
통계청(2006), 「2000년 기준 서비스업활동지수」 업종선정(안)
통계청(2007), 「도소매업동태조사」 업무편람
통계청(2008), 「2005년 기준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보고서
통계청(2009), 「서비스업 동향조사 및 생산지수」 업무편람
통계청(2010),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표」 온라인 간행물
통계청(1991),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2000),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2008), 「한국표준산업분류」
문권순(2006), 「연쇄형 지수 작성 방법」 내부자료
문권순(2007), 「월자료에 의한 연쇄형 지수의 작성 방법」 내부자료

<부 록>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운수업(H)]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운송업	철도운송업	철도운송업	2.83	2.85	1.63	5.23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철도	2.87	2.89	1.68	2.06
			시내버스	6.37	6.41	7.50	9.07
			기타				
		시외버스	시외버스	1.88	1.89	3.21	4.82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택시	13.51	13.59	20.51	26.67
			전세버스				
			장의차량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일반 화물차	24.48	24.62	17.99	25.39
수상 운송업	해상 운송업		용달/개별 화물차				
			기타 도로화물				
		소화물 전문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1.37	-	-	-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업				
			늘찬 배달업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외항 운송업	외항 운송업	외항 여객	11.05	11.14	11.87	14.02
			외항 화물				
		내항 운송업	내항 여객	1.34	1.32	1.40	
			내항 화물				
항공 운송업	정기 항공	정기 항공	정기 항공	7.66	7.71	6.97	10.54
	부정기 항공	부정기 항공	부정기 항공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보관 및 창고업	일반 창고업	1.47	1.48	1.92	3.19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기타 운송지원 서비스업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철도 운송지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0.47	0.33	0.53	1.80
			화물 자동차 터미널				
			도로 및 관련시설	5.23	5.33	7.52	6.79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기타				
			항구, 기타 해상 터미널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송 운송지원				
			공항 운영업	2.71	2.76	1.94	2.50
	화물 취급업	화물 취급업	기타				
			항공/육상 화물 취급업	2.56	2.58	2.42	4.89
		그 외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수상 화물 취급업				
			화물 운송/중개/대리 서비스	4.05	4.12	-	-
			화물 포장/검수/형량 서비스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숙박 및 음식점업(I)]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업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4.86	4.89	6.91	8.48
			여관업	4.07	4.10	3.99	4.87
			휴양콘도 운영업	1.18	1.19	0.74	0.8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0.48		
	기타 숙박업	기타 숙박업	기숙사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	38.57	41.84	37.38	24.54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구내 식당업	기관구내 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이동 음식업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업	1.1	1.1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19	9.25	9.04	2.15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12.54	12.62	13.64	9.27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2.41	2.42	5.05	5.89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출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서적 출판업	교과서/학습서적 출판업	3.13	-	-	-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신문 발행업	3.01	-	-	-
			잡지/정기간행물 발행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기 광고간행물 출판업	정기 광고간행물 출판업	12.75	13.82	-	-
			기타 인쇄물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게임 SW 개발 공급업	0.22	0.22	0.10	0.81
			기타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응용 SW 개발 및 공급업				
			응용 SW 개발/공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일반 영화/비디오물	0.22	0.22	0.10	0.81
			애니메이션 영화/비디오물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광고 영화/비디오물	0.22	0.22	0.10	0.81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2.05	2.02	2.78	0.39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방송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영화관 운영업	2.05	2.02	2.78	0.39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악/기타 오디오 출판업	-	0.40	0.26	
			녹음시설 운영업				
			음향/기타 오디오 출판업				
통신업	우편업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1.90	1.91	4.04	14.40
			지상파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2.40	2.42	1.81	
			유선방송업				
정보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4.55	4.57	3.68	
			우편업				
			유선통신업				
	기타 전기통신업	무선통신업	무선통신업	17.78	17.89	19.59	46.58
			위성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통신 제관매업	4.55	4.57	3.68	
			기타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42	5.61	15.63	8.43
			컴퓨터시설 관리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	1.54	0.87	0.9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1.15	2.70	1.65	0.34
			뉴스 제공업				
			DB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정보 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DB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금융 및 보험업(K)]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	중앙은행	중앙은행				70.22
		일반은행	국내은행	59.25	67.31	43.50	
			외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15.92	16.02	22.83	
			상호 저축은행				
			기타 저축기관				
	투자기관	투자기관	자산운영회사	4.45	4.48	5.41	5.69
			기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여신 금융업	금융리스업	3.33	1.34	-	6.14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15.87	11.53	15.43	10.96
			기타 여신 금융업				
		그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2.95
			금융지주회사				
기타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생명 보험업	13.06	12.10	25.15	39.61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손해 보험업	7.61	7.45	14.44	20.40
			보증 보험업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2.43	12.86	22.25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4.51	4.55	2.06	-
			사업 공제업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23.95	24.10	30.17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투자 자문업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2.27	2.28	4.13	10.26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타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부동산업 및 임대업(L)]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9.95	10.01	5.39	26.80	
			기타 부동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18.11	18.22	5.02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20.38	20.51	18.28	26.70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부동산 자문/중개업	10.48	10.55	6.99	6.82		
부동산 감정평가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1.11	1.12	-	27.49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1.10	1.10	-		
		음반 및 비디오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서적 임대업					
			의류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 용 기계장비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1.47	1.47	18.1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연구 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자연과학	물리/화학/생물학	10.45	10.52	8.73	13.44			
			농학							
			의학/약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전기·전자공학							
	기타 공학									
인문 및 사회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경제학								
		기타 인문/사회과학								
전문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변호사업	4.82	4.85	5.59	12.31			
			변리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	5.19	5.22	4.62				
			세무사업							
			기타 회계 관련							
	광고업 3.73	광고 대행업	광고 대행업	3.73	1.21	1.59	2.96			
			옥외/전시 광고업							
		기타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시장(여론) 조사	시장(여론) 조사	시장/여론조사업		0.61	0.43				
	회사본부	회사본부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경영컨설팅	경영컨설팅업	4.52	4.61	2.7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건축 및 조정 설계 서비스업	건축설계, 관련	6.40	5.22	5.61	31.17			
			도시계획/조경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토목 엔지니어링		6.34	5.35				
			환경 컨설팅, 관련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물질성분 검사/분석업	5.09	5.12	4.39				
			기타 기술 시험, 검사/분석업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탐사업							
			지도제작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사업	수사업	수사업							
	전문 디자인업	전문 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	0.81	0.81	0.78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기타 디자인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인물사진/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1.57	1.58	1.41	17.72			
			상업용 사진 촬영업							
			사진 처리업							
			매니저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사업/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계량/전본 추출업										
기타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3.01	3.03	1.71	(17.7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건축물 일반 청소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	4.26	4.29	5.37	(17.7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고용알선업	고용알선업	10.39	10.45	7.39	(17.7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여행사업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1.39	1.40	1.08	1.50
			국내 여행사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5.88	5.92	6.18	(17.7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무지원 서비스업	문서작성업	4.23	4.26	1.11	(17.72)
			복사업				
			기타 사무지원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콜 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기타 사업지원				

주) 1996년 가중치는 여행사업 제외하고 5개 소분류를 합하여 17.72 값임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교육서비스업(P)]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유아 교육기관	유아 교육기관	4.54	4.54	2.42	10.41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등 교육기관	일반 중등 교육기관	중학교	55.44	55.43	44.07	-
			일반 고등학교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고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	23.05	23.05	18.86	-
			대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 학원	일반 교습 학원	일반 교과 학원	24.88	22.49	20.23	46.62
			외국어 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일반 교습 학원				
	기타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예술 학원	예술 학원				
		사회교육 시설	사회교육 시설				
		직업 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운전 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기타 교육기관	컴퓨터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보건업	병원	병원	종합 병원	26.87	27.03	39.53	15.64	
			일반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의원	의원	일반 의원	23.54	23.69		9.43	
			치과 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원	공중 보건 의료원	공중 보건 의료원		2.49			
	기타 보건업	기타 보건업	앰블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	2.07	2.08	-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	4.81	4.85	-	-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직업재활용 운영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0.76	0.80	0.56	0.67
		공연단체	연극 단체				
			무용 및 음악 단체				
			기타 공연 단체				
		자영 예술가	공연 예술가				
			비 공연 예술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업	2.46	2.48	1.86	0.38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기록보존소				
			독서실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실외 경기장				
			경주장	2.64	2.65	3.82	3.76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3.76	3.78	3.02	0.79
			스키장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 시설	3.54	3.40	4.80	2.91
			체력단련시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0.37	1.09	0.94	-
			스포츠클럽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35	1.36	0.80	-
			전자게임장	6.77	6.81	4.81	5.10
		오락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노래연습장				
			기타 오락장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기타 수상오락				
		캠핑 및 베딩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7.11	7.16	5.58	-
			기타 캠핑 및 베딩업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기원 운영업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0.45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협회 및 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산업 단체	산업 단체	8.78	8.84	9.06	-
		전문가 단체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기타 협회 및 단체	종교 단체	불교 단체				
			기독교 단체				
			천주교 단체				
			민족종교 단체				
			기타 종교단체				
		정치 단체	정치 단체				
		시민운동 단체	환경운동 단체				
	기타 시민운동 단체						
기타 협회/단체	기타 협회 및 단체						
수리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일반기계 수리업	건설·광업용 기계장비				
			기타 일반 기계장비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통신장비				
		전기 및 정밀기기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 종합 수리	5.27	5.30	-	-
			자동차 전문 수리	6.29	6.33	-	-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	3.51	3.53	-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					
		시계, 귀금속 및 악기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6.65	5.64	6.56	10.71
			두발 미용원				
			피부 미용업				
			기타 미용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욕탕업	1.98	1.68	2.49	
			마사지업	0.50	0.44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산업용 세탁업	2.26	1.93	2.36	3.84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0.73	0.63	0.60	6.01
			화장, 묘지 분양/관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식장업	1.66	1.42	1.61	
			점술 및 유사 서비스				
			개인 간병인, 유사 서비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애완동물 장모 및 보호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하수 처리업	0.85	0.86	0.73	3.57
		폐수 처리업	폐수 처리업				
		분뇨 처리업	분뇨 처리업				
			축산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45	3.48	3.14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방사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금속 원료 재생업				
			비금속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도매 및 소매업(G)]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신품 중고 자동차	자동차 신품 중고 자동차	6.47	6.51	11.16	15.00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신품 부품 및 내장품	자동차 타이어/튜브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내장품	4.28	4.31	5.62	8.05			
		중고 부품 및 내장품	자동차중고 부품/내장품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모터사이클/부품 도매업 모터사이클/부품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동물							
			음·식료품/담배							
			섬유/의복/신발/가죽제품							
			기계장비							
			상품종합							
			기타 상품							
	산업용 농축산물 및 생물 도매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생물 도매업	곡물	2.11	2.13	2.58	27.17			
			종자/묘목							
			사료							
			화초/식물							
			동물							
	기타 산업용 농축산물/동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비가공 식품 도매업	과실/채소	16.58	22.12	32.76				
			육류 도매업							
			수산물 도매업							
			기타 비가공 식품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빵/과자							
			낙농품							
			기타 가공식품							
			음료 및 담배 도매업					주류	5.39	
	비알콜음료 담배									
	가정용품 도매업	가정용 섬유/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도매업	가정용 섬유/실	7.67	29.73	32.31	32.92			
			커튼/침구용품							
			셔츠/외의							
			유아 의류							
내의										
가죽/모피 제품										
의복 액세서리										
기타 가정용 의복류										
신발 도매업		신발								
조명기구, 가구 및 비전기식 가정용기기 도매업		가구	2.30							
		전구/램프/조명장치								
		요업제품/주방용품								
		기타 가정기구								
의약품류 도매업		의약품	7.71							
		의료용품	2.72							
		화장품								
	비누/세정제	2.73								
종이, 인쇄물 문방구 도매업	종이제품 문구용품 서적/잡지/신문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도매 및 소매업(G)] 계속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가정용품 도매업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도매업 ¹⁾	음반 및 영상물 도매업	3.61			
			악기 도매업				
			장난감, 취미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자전거 도매업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가방, 여행 용품 도매업				
			시계, 귀금속 제품 도매업				
			사진기, 광학기기 도매업				
		기타 가정용 제품 도매업					
	기계장비 도매업	컴퓨터 도매업	컴퓨터 도매업	15.52	22.99	31.17	20.37
		가전제품 도매업	가전제품 도매업				
			통신장비 도매업				
		산업 기계장비 도매업	농업 기계장비 도매업	10.06			
			광업, 건설 기계장비 도매업				
			공작기계 도매업				
			기타 기계장비 도매업				
		기타 산업 기계장비 도매업	사무 집기 도매업				
			의료, 과학 기기 도매업				
			운수업 기계장비 도매업				
			전기 기계장비 도매업				
			기타 기계장비 도매업				
	건축재 도매업	건축자재 도매업	건축 목재 도매업	8.73	8.80	9.81	
			건축 골재 도매업				
			유리, 창호 도매업				
		철물, 장비 도매업	배관, 냉난방 장치 도매업				
			철물, 수공구 도매업				
		기타 건축재 도매업	도료 도매업				
		벽지, 장판 도매업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전문 도매업	연료 도매업	고체연료 도매업	15.42	15.54	21.43	30.51
			액체연료 도매업				
			기체연료 도매업				
		1차 금속 도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6.25	6.30	6.42	
			금속광물 도매업				
		화학물질 도매업	염료, 안료 도매업				
			비료, 농약 도매업				
합성고무, 합성수지 도매업							
기타 화학물질 도매업							
섬유 도매업		방직 섬유, 실 도매업					
		직물 도매업					
기타 전문 도매업		재생 재료 수집, 판매업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상품종합 도매업	상품종합 도매업	상품종합 도매업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도매 및 소매업(G)] 계속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	대형 소매업	백화점	10.87	37.06	34.33	15.81
			대형 소매업; 백화점 제외	12.59			
		음식료품 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5.25			
			편의 연쇄점	2.00			
			기타 음식료품 종합	6.12			
		기타 종합 소매업	기타 종합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식료품 소매업	곡물	3.86	7.46	11.52	23.00
			육류				
			수산물	1.36			
			과실 및 채소	2.20			
			빵 및 과자				
			건강 보조식품				
		기타 식료품					
		음료, 담배 소매업	음료 소매업				
	담배 소매업						
	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컴퓨터 소매업	컴퓨터 관련	4.57	(9.07)	(12.49)	
		통신기기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2.31			
	의복류 소매업	의복류, 장신구 소매업	직물제품	11.28	12.95	16.27	
			한복				
			정장				
			유아 의류				
			속옷				
			서즈				
			기타 섬유직물, 장신구				
		신발 소매업	신발 소매업	1.59			
		가방,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가죽제품 소매업				
		주택·설비 소매업	철물, 주택자재 소매업	철물, 난방장치			
	수공구						
	벽지, 장판						
	페인트/유리, 기타 주택자재						
	가구 소매업		가구	1.70	(9.07)	(12.49)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전기용품, 조명장치	1.18			
		식탁, 주방용품					
		약기					
		기타 가정 비취제품					
	문방구, 오락물 소매업	문방구 소매업	서적, 잡지	2.40	(12.77)	(20.04)	
			문구용품				
		음반, 영상물 소매업	음반, 영상물	1.24			
		운동기구 소매업	운동용품				
		자전거					
	장난감 소매업	장난감					
	연료 소매업	차량 연료 소매업	차량 주유소업	8.20	8.25	11.46	
			차량 가스충전업				
		가정용 연료 소매업	가정용 고체연료	1.11			
			가정용 액체연료				
		가정용 가스연료					

주) 괄호(굵은) 안의 자료는 포괄범위가 달라져 여러 세부 분류를 합한 값임



〈부표 1〉 서비스업 분류체계 및 가중치 변화[도매 및 소매업(G)] 계속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10	2005	2000	1996	
소매업; 자동차 제외	전문상품 소매업	의약, 화장품 소매업	의약, 의료용품	5.06	6.54	7.74	(12.77) (20.04)	
			의료기구					1.44
			화장품, 방향제	2.67				
		사무 집기 소매업	사무용 일반기기					
			안경					
			사진기, 사진용품					
			기타 광학, 정밀 기기					
		시계, 귀금속 소매업	시계, 귀금속	1.73				
		예술품, 선물용품 소매업	예술품, 골동품					
			민속, 관광 선물용품					
		기타 전문상품 소매업	꽃, 화초					
			애완동물, 관련용품					
			기타 상품 전문점					
		중고품 소매업	중고 가구					
			중고 가전제품					
			기타 중고품					
	무점포 소매업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7.18	7.23	8.91	-	
			기타 통신 판매업					
		노점상	노점상					
		기타 무점포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 판매업					
			기타 무점포 판매업					

주) 괄호(굵은) 안의 자료는 포괄범위가 달라져 여러 세부 분류를 합한 값임

〈부표 2〉 도매 및 소매업(G) 2008년 연간조사 결과 세부업종 가중치

(단위 : 백만 원)

산업분류	산업 명	매출액	구성비(천분비)
G	도매 및 소매업	653,349,194	1000.00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6,454,458	55.80
451	자동차 판매업	24,185,821	37.02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21,713,329	33.23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2,472,493	3.78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1,738,152	17.97
4521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1,574,724	17.72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1,928,435	2.95
45219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9,646,289	14.76
45220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63,428	0.25
453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530,485	0.81
4530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530,485	0.81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278,432	0.43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252,053	0.39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99,932,572	612.13
461	상품 중개업	10,943,870	16.75
46101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353,446	0.54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2,347,188	3.59
46103	섬유/의복/신발/가죽제품 중개업	1,481,883	2.27
46104	기계장비 중개업	731,915	1.12
46105	상품종합 중개업	4,673,839	7.15
46109	기타 상품 중개업	1,355,598	2.07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343,279	8.18
46201	곡물 도매업	1,217,621	1.86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314,107	0.48
46203	사료 도매업	2,228,480	3.41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617,898	0.95
46205	산동물 도매업	100,982	0.15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864,191	1.32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68,337,435	104.60
4631	비가공 식품 도매업	31,476,809	48.18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11,336,118	17.35
46312	육류 도매업	10,103,278	15.46
46313	수산물 도매업	9,402,165	14.39
46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635,247	0.97
4632	가공식품 도매업	20,896,181	31.98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1,277,321	1.96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921,977	1.41
46323	빵 및 과자 도매업	2,489,273	3.81
46324	낙농품 도매업	3,813,281	5.84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12,394,330	18.97
4633	음료 및 담배 도매업	15,964,445	24.43
46331	주류 도매업	8,992,291	13.76
46332	비알콜음료 도매업	3,383,114	5.18
46333	담배 도매업	3,589,040	5.49

산업분류	산업 명	매출액	구성비(천분비)
464	가정용품 도매업	67,241,258	102.92
4641	가정용 섬유/의복/의복액세서리 도매업	15,403,698	23.58
46411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690,251	1.06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524,629	0.80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10,548,279	16.14
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190,180	0.29
46415	내의 도매업	629,323	0.96
46416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229,795	0.35
46417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	2,268,153	3.47
46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323,087	0.49
46420	신발 도매업	2,085,165	3.19
4643	조명기구, 가정용 가구 및 비전기식 가정용기기 도매업	5,262,480	8.05
46431	가정용 가구 도매업	1,549,703	2.37
46432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1,344,213	2.06
46433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2,084,090	3.19
46439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284,474	0.44
4644	의약품/의료용품/화장품 도매업	27,820,273	42.58
46441	의약품 도매업	21,413,684	32.78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1,964,071	3.01
46443	화장품 도매업	3,201,217	4.90
46444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1,241,300	1.90
4645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6,569,442	10.06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1,472,796	2.25
46452	문구용품 도매업	2,567,249	3.93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2,529,396	3.87
4646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도매업	3,731,370	5.71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214,756	0.33
46462	악기 도매업	249,819	0.38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1,153,744	1.77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1,869,738	2.86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243,313	0.37
4649	기타 가정용품	6,368,830	9.75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1,036,592	1.59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1,917,978	2.94
464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1,707,649	2.61
46499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1,706,611	2.61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87,406,943	133.78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18,396,764	28.16
4652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16,449,383	25.18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9,118,382	13.96
46522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7,331,001	11.22
465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005,635	13.78
4653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1,744,852	2.67
46532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1,867,692	2.86
46533	공작기계 도매업	2,830,262	4.33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2,562,829	3.92
4659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3,555,161	66.66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2,571,663	3.94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9,454,634	14.47
46593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49,579	1.45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21,980,475	33.64
46599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8,598,810	13.16

산업분류	산업 명	매출액	구성비(천분비)
466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27,016,093	41.35
4661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7,974,564	12.21
466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3,398,914	5.20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3,385,258	5.18
466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1,190,392	1.82
4662	철물 및 냉/난방 장치 도매업	7,875,344	12.05
46621	배관 및 냉/난방 장치 도매업	2,810,095	4.30
466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5,065,248	7.75
4669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11,166,185	17.09
46691	도료 도매업	2,387,484	3.65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1,284,970	1.97
466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7,493,731	11.47
467	기타 전문 도매업	106,772,386	163.42
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24,924,936	38.15
46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77,900	0.73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17,665,036	27.04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6,781,999	10.38
4672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38,301,418	58.62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37,521,752	57.43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779,666	1.19
467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18,461,096	28.26
46731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959,435	1.47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3,607,109	5.52
4673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4,322,326	6.62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9,572,227	14.65
4674	방직용 섬유,사 및 직물 도매업	8,664,120	13.26
46741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1,773,872	2.72
46742	직물 도매업	6,890,248	10.55
4679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16,420,816	25.13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0,174,749	15.57
46799	그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6,246,067	9.56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26,871,310	41.13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216,962,163	332.08
471	종합 소매업	76,539,267	117.15
4711	대형 종합 소매업	45,851,504	70.18
47111	백화점	13,973,537	21.39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31,877,967	48.79
4712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9,922,921	45.80
47121	슈퍼마켓	15,635,630	23.93
47122	체인화 편의점	6,572,763	10.06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7,714,527	11.81
47190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764,843	1.17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1,169,118	17.10
4721	식료품 소매업	10,862,220	16.63
47211	곡류 소매업	618,313	0.95
47212	육류 소매업	3,828,590	5.86
47213	수산물 소매업	1,850,325	2.83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2,017,189	3.09
47215	빵 및 과자류 소매업	242,231	0.37
47216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1,028,217	1.57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1,277,356	1.96
4722	음료 및 담배 소매업	306,898	0.47
47221	음료 소매업	224,028	0.34
47222	담배 소매업	82,870	0.13



산업분류	산업 명	매출액	구성비(천분비)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6,886,185	25.85
4731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8,959,636	13.71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1,558,468	2.39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7,401,167	11.33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7,926,550	12.13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1,920,843	33.55
4741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19,299,518	29.54
4741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699,401	1.07
47412	한복 소매업	98,498	0.15
47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5,217,290	7.99
47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454,697	0.70
47415	내의 소매업	834,026	1.28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11,065,441	16.94
47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930,164	1.42
47420	신발 소매업	1,851,843	2.83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769,482	1.18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7,522,082	11.51
4751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	3,301,282	5.05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125,658	1.72
47512	기계공구 소매업	314,152	0.48
47513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848,219	1.30
47519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1,013,254	1.55
47520	가구 소매업	2,491,899	3.81
4759	그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728,901	2.65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99,693	0.76
4759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697,846	1.07
47593	악기 소매업	213,399	0.33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317,963	0.49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6,394,909	9.79
476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3,896,893	5.96
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2,099,316	3.21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1,797,577	2.75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73,955	0.11
4763	스포츠용품 소매업	1,952,039	2.99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1,665,438	2.55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286,601	0.44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2,022	0.72
477	연료 소매업	43,474,259	66.54
4771	차량용 연료 소매업	41,000,123	62.75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34,276,573	52.46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6,723,550	10.29
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2,474,136	3.79
47721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17,347	0.03
4772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997,935	1.53
4772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1,458,855	2.23

산업분류	산업 명	매출액	구성비(천분비)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8,251,127	27.93
4781	의약품, 의료용 기기,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11,958,594	18.30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9,056,563	13.86
47812	의료용 기기 소매업	592,712	0.91
47813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2,309,320	3.53
4782	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1,763,755	2.70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392,679	0.60
47822	안경 소매업	1,140,906	1.75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192,158	0.29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38,012	0.06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1,647,290	2.52
4784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696,813	1.07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51,802	0.39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45,012	0.68
4785	그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637,490	2.51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1,224,068	1.87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180,207	0.28
4785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	233,216	0.36
4786	중고 상품 소매업	547,183	0.84
47861	중고 가구 소매업	90,212	0.14
47862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267,118	0.41
47869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189,854	0.29
479	무점포 소매업	14,804,372	22.66
4791	통신 판매업	7,885,906	12.07
47911	전자상거래업	5,324,638	8.15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2,561,269	3.92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0	0.00
47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6,918,466	10.59
47991	자동차판매기 운영업	102,125	0.16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2,286,362	3.50
47993	방문 판매업	4,529,978	6.93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0	0.00



〈부표 3〉 도매 및 소매업(G) 2008년 세부업종별 부가가치와 가중치

(단위 : 백만 원)

분류	매출액	매출원가	부가가치율	부가가치	구성비(천분비)
G	653,349,194	494,797,069	0.24	158,552,125	1,000.0
45	36,454,458	26,827,652	0.26	9,626,806	60.72
451	24,185,821	17,329,459	0.28	6,856,362	43.24
452	11,738,152	9,105,934	0.22	2,632,218	16.60
453	530,485	392,258	0.26	138,227	0.87
46	399,932,572	316,181,465	0.21	83,751,107	528.22
461	10,943,870	7,630,375	0.30	3,313,495	20.90
462	5,343,279	4,096,856	0.23	1,246,423	7.86
463	68,337,435	52,570,433	0.23	15,767,002	99.44
464	67,241,258	47,791,161	0.29	19,450,097	122.67
465	87,406,943	68,254,421	0.22	19,152,522	120.80
466	27,016,093	21,185,418	0.22	5,830,675	36.77
467	106,772,386	90,600,162	0.15	16,172,224	102.00
468	26,871,310	24,052,640	0.10	2,818,670	17.78
47	216,962,163	151,787,952	0.30	65,174,211	411.06
471	76,539,267	51,339,640	0.33	25,199,627	158.94
4711	45,851,504	29,580,199	0.35	16,271,305	102.62
4712	29,922,921	21,300,447	0.29	8,622,474	54.38
4719	764,843	458,995	0.40	305,848	1.93
472	11,169,118	7,319,978	0.34	3,849,140	24.28
473	16,886,185	12,354,531	0.27	4,531,654	28.58
474	21,920,843	13,241,272	0.40	8,679,571	54.74
475	7,522,082	4,675,312	0.38	2,846,770	17.95
476	6,394,909	4,250,689	0.34	2,144,220	13.52
477	43,474,259	38,577,127	0.11	4,897,132	30.89
478	18,251,127	11,781,834	0.35	6,469,293	40.80
479	14,804,372	8,247,569	0.44	6,556,803	41.35

〈부표 4〉 도매 및 소매업(G) 2008년 과세자료 및 연간조사 자료 비교

(단위 : 백만 원, 개)

분류	2008년 과세 자료(부가가치)			2008년 연간조사	
	과세표준합계금액	구성비	사업자	매출액	사업체
G	760,077,846	1,000.00	1,234,412	653,349,194	859,794
45	25,116,002	33.04	30,177	36,454,458	22,936
451	12,874,631	16.94	7,648	24,185,821	6,564
452	11,685,775	15.37	20,156	11,738,152	14,436
453	555,596	0.73	2,373	530,485	1,936
46	529,823,857	697.07	437,283	399,932,572	224,010
461	37,863,030	49.81	54,497	10,943,870	6,503
462	7,428,983	9.77	17,374	5,343,279	7,766
463	66,915,934	88.04	91,821	68,337,435	49,570
464	79,621,041	104.75	91,351	67,241,258	52,732
465	99,720,675	131.20	74,933	87,406,943	41,982
466	31,975,943	42.07	38,035	27,016,093	24,499
467	163,707,671	215.38	64,912	106,772,386	39,684
468	42,590,580	56.03	4,360	26,871,310	1,274
47	205,137,987	269.89	766,952	216,962,163	612,848
471	62,886,721	82.74	125,594	76,539,267	112,249
4711	38,099,337	50.13	580	45,851,504	506
4712	23,320,706	30.68	122,189	29,922,921	108,940
4719	1,466,678	1.93	2,825	764,843	2,803
472	10,724,636	14.11	100,960	11,169,118	96,955
473	17,741,620	23.34	33,068	16,886,185	30,718
474	18,336,537	24.12	135,310	21,920,843	135,503
475	8,301,346	10.92	67,377	7,522,082	64,243
476	5,504,383	7.24	40,641	6,394,909	37,162
477	53,881,441	70.89	24,682	43,474,259	20,454
478	10,244,700	13.48	114,818	18,251,127	99,729
479	17,516,603	23.05	124,502	14,804,372	15,835